



제 426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김도읍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958호)

2025. 6.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임재금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진료비용 게시 대상 동물진료업의 행위를 법률에 명시	2
2. 진단서 부정 발급자 등에 대한 과태료 상향	6

I.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김도읍의원 등 10인

나. 제 안 일 : 2025. 4. 18.

다. 회 부 일 : 2025. 4. 2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반려동물 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동물진료가 증가하고 있으나, 동물병원을 이용하는 이용자에게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의 정보 제공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초진·재진 진찰, 진찰에 대한 상담, 입원, 백신 접종 등 주요 동물진료비용을 동물소유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게시하도록 함으로써 동물소유자에게 동물진료에 대한 올바른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0조제1항 및 제41조 등).

Ⅲ. 검토의견

1. 진료비용 게시 대상 동물진료업의 행위를 법률에 명시

현행법은 동물병원 개설자로 하여금 진찰, 입원, 예방접종, 검사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을 게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동물병원 개설자가 게시하여야 할 동물진료업 행위의 구체적 항목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0조(진찰 등의 진료비용 게시) ① 동물병원 개설자는 진찰, 입원, 예방접종, 검사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을 동물소유자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게시하여야 한다.	제20조(진찰 등의 진료비용 게시) ① 동물병원 개설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을 동물소유자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동물병원에서 진료하지 아니하는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진료비용은 제외한다. 1. 초진·재진 진찰, 진찰에 대한 상담 2. 입원

현행	개정안
② (생략)	3. <u>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백신의 접종</u> 4. <u>그 밖에 동물소유자등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¹⁾</u> ② (현행과 같음)

현행법은 동물병원 개설자로 하여금 진찰, 입원, 예방접종, 검사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을 동물소유자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게시하도록 하고,²⁾³⁾

동법 시행규칙은 현행법에 따른 진료비용을 ① 초진·재진 진찰료, 진찰에 대한 상담료, ② 입원비, ③ 개 종합백신, 고양이 종합백신, 광견병백신, 켄넬코프백신, 개 코로나바이러스백신 및 인플루엔자백신의 접종비, ④ 전혈구 검사비와 그 검사 관독료 및 엑스선 촬영비와 그

1) “행위에 대한 진료” → “행위”로 자구 정리 필요

2) 제20조(진찰 등의 진료비용 게시) ① 동물병원 개설자는 진찰, 입원, 예방접종, 검사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을 동물소유자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게시하여야 한다.

② 동물병원 개설자는 제1항에 따라 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진료비용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3) 동물병원 이용자의 알권리와 진료 선택권 보장을 위해 진찰, 입원, 예방접종, 검사 등의 진료비용을 소비자가 알기 쉽게 동물병원 등에 게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의사법」이 개정(개정 '22.1.4., 시행 '22.7.5.)된 바 있으며, 법률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동물병원에서 진료비용을 게시해야 하는 항목과 게시 방법을 하위법령에 규정했고, 진료비용 게시 의무를 적용받는 동물병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현재 제도를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있음

- ('23년) 수의사 2인 이상 종사하는 동물병원 → ('24년) 수의사 1인 이상 종사하는 동물병원

촬영 판독료, ⑤ 그 밖에 동물소유자등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으로 구체화하고 있음.⁴⁾

<동물진료비용 의무 게시 항목>

구분	내용(20종)
① 진찰비	초진·재진, 진찰에 대한 상담
② 입원비	입원
③ 백신접종비	개 종합백신, 고양이 종합백신, 광견병백신, 켄넬코프백신, 인플루엔자백신, 개 코로나바이러스백신
④ 검사비	전혈구 검사, X-ray 촬영, 혈액화학검사, 전해질검사, CT, MRI, 초음파검사
⑤ 투약/조제비	심장사상충 예방, 외부기생충 예방, 광범위 구충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4) 제18조의3(진찰 등의 진료비용 게시 대상 및 방법) ① 법 제20조제1항에서 “진찰, 입원, 예방접종, 검사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진료비용을 말한다. 다만, 해당 동물병원에서 진료하지 않는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 및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출장진료전문병원의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은 제외한다.

1. 초진·재진 진찰료, 진찰에 대한 상담료
2. 입원비
3. 개 종합백신, 고양이 종합백신, 광견병백신, 켄넬코프백신, 개 코로나바이러스백신 및 인플루엔자백신의 접종비
4. 전혈구 검사비와 그 검사 판독료 및 엑스선 촬영비와 그 촬영 판독료
5. 그 밖에 동물소유자등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

②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진료비용을 게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해당 동물병원 내부 접수창구 또는 진료실 등 동물소유자등이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책자나 인쇄물을 비치하거나 벽보 등을 부착하는 방법
2. 해당 동물병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 이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의 초기화면에 게시하거나 배너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진료비용을 게시하는 화면으로 직접 연결되도록 해야 한다.

개정안은 하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물병원 개설자가 의무적으로 진료비용을 게시하여야 할 동물진료업의 행위 항목’ 중 일부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려는 것으로,⁵⁾ 진료비용 게시 항목에 대한 국민의 이해가능성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의료법」은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비급여 진료비용을 환자나 보호자가 알기 쉽게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고지해야 하는 세부 비급여 진료 항목을 법률에 별도로 규정하지는 않고 있음.⁶⁾

이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하위법령의 내용을 법률에 명시해야 할 정도의 중요성, 개정의 실효성 등을 고려할 때 개정안에 대하여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며,

대한수의사회는 법률에서 정한 일반적인 사항을 부령에서 구체화하는 현행법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함.

5) ① 초진·재진 진찰, 진찰에 대한 상담, ② 입원, ③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백신의 접종, ④ 그 밖에 동물소유자등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

6) 「의료법」 제45조(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① 의료기관 개설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또는 「의료급여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의 비용(이하 “비급여 진료비용”이라 한다)을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하여야 한다.

② 의료기관 개설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이 환자로부터 징수하는 제증명수수료의 비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의료기관 개설자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고지·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2. 진단서 부정 발급자 등에 대한 과태료 상향

현행법은 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단서 등을 발급한 사람, ② 시설·장비 등의 사용 제한 또는 금지 명령을 위반하거나 시정 명령을 미이행한 자, ③ 진료비용 게시 관련 시정 명령을 미이행한 자에 대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에 대한 과태료를 300만원 이하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2항·제3항)

현행	개정안
제41조(과태료) ① (생략) <u><신설></u>	제41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u>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u> 1.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발급한 사람 2. 제30조제2항에 따른 사용 제한 또는 금지 명령을 위반하거나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30조제3항에 따른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u>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u>	<u>③</u> -----

현행	개정안
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
1.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발급한 사람	<삭 제>
1의2. ~ 6의5. (생략)	1의2. ~ 6의5. (현행과 같음)
7. 제30조제2항에 따른 사용 제한 또는 금지 명령을 위반하거나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삭 제>
7의2. 제30조제3항에 따른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삭 제>
8. · 9. (생략)	8. · 9. (현행과 같음)
③ (생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현행법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단서 등을 발급한 사람,⁷⁾ 시설·장비 등의 사용 제한 또는 금지 명령을 위반하거나 시정 명령을 미이행한 자,⁸⁾ 진료비용 게시 관련 시정 명령을 미이행한 자⁹⁾ 등에

7) 제12조(진단서 등) ① 수의사는 자기가 직접 진료하거나 검안하지 아니하고는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한 처방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발급하지 못하며, 「약사법」 제85조제6항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이하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이라 한다)을 처방·투약하지 못한다. 다만, 직접 진료하거나 검안한 수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서, 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을 때에는 같은 동물병원에 종사하는 다른 수의사가 진료부 등에 의하여 발급할 수 있다.

8) 제30조(지도와 명령)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군수는 동물병원이 제17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7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장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거나 위반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대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동물진료 관련 법적 분쟁에서 진단서 등의 부정발급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¹⁰⁾ 동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로 인한 동물병원 종사자의 피폭 위험 문제에 대한 지적이 있으며,¹¹⁾ 동물병원 진료비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¹²⁾ 등을 고려할 때,

개정안은 현행법에서 금지하는 각 행위의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제17조의3(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설치·운영) ① 동물을 진단하기 위하여 방사선발생장치(이하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려는 동물병원 개설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② 동물병원 개설자는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각 호 생략>

③ 동물병원 개설자는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제17조의5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검사기관 또는 측정기관으로부터 정기적으로 검사와 측정을 받아야 하며,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被曝)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17조의4(동물 진단용 특수의료장비의 설치·운영) ① 동물을 진단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의료장비(이하 “동물 진단용 특수의료장비”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려는 동물병원 개설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장비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동물병원 개설자는 동물 진단용 특수의료장비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설치 인정기준에 맞게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 동물병원 개설자는 동물 진단용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한 후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실시하는 정기적인 품질관리검사를 받아야 한다.

9) 제30조(지도와 명령)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군수는 동물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위반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20조(진찰 등의 진료비용 게시) ① 동물병원 개설자는 진찰, 입원, 예방접종, 검사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을 동물소유자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게시하여야 한다.

② 동물병원 개설자는 제1항에 따라 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진료비용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10) 네이트뉴스, “‘학대’ 의혹 동물병원의 진단서엔 ‘모든 건 보호자 동의’”, 2022. 1. 20.

URL: <https://news.nate.com/view/20220120n01643>

11) SBS뉴스, “‘강아지 CT 찍을 때마다 걱정’ 피폭 위험 내몰린 동물병원 종사자”, 2025. 1. 2.

URL: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932834

12) 데일리벳, “부정확한 동물병원 진료비 공시제, 개편이 필요하다”, 2024. 3. 27.

URL: <https://www.dailyvet.co.kr/news/policy/208727>

를 상향하고자 하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단서 등을 발급한 사람과 시정 명령을 미이행한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 외에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행정처분을 병과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을 직접 진료하지 않고 진단서를 발급하는 자에 대한 처분 기준의 강화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현행법령으로도 충분히 제재가 가능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며,¹³⁾

대한수의사회는 현재도 과태료와 행정처분 병과가 가능한 상황으로, 동물병원 및 수의사들에게 과도한 규제로 작용할 우려가 있어 현행 법률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문 의 처
02)6788-5424

13) 이와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사람 의료의 경우 진단서 발급과 관련된 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처분 수준이 시정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처분보다 높은 점(진단서 발급 관련 위반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시정 명령 관련 위반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을 비추어 볼 때, 유사 법령 간 법 체계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추가적으로 제시함.

참고1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 의무화 제도 추진 현황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 배경

- 반려동물 양육자의 알권리 보장 및 동물병원 진료 선택권을 제고하기 위해 다빈도 동물 진료 항목에 대한 비용게시 의무화 추진*

□ 추진 현황

-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 의무화 법적 근거* 마련(「수의사법」 개정, '22.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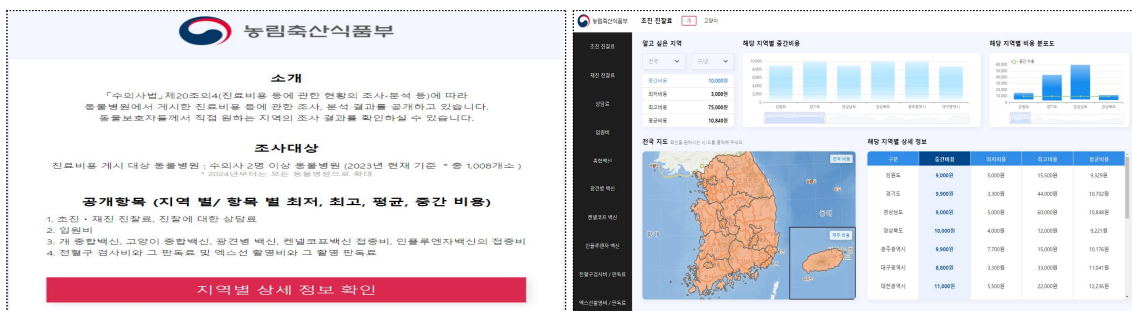
[수의사법]

제20조(진찰 등의 진료비용 게시) ① 동물병원 개설자는 진찰, 입원, 예방접종, 검사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을 동물소유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게시하여야 한다.

② 동물병원 개설자는 제1항에 따라 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진료비용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 비용게시 의무 대상 진료 항목 11종* 확정(「수의사법 시행규칙」 개정, '22.7.5.)
 - * 진찰비 3(초진료, 재진료, 상담료), 입원비 1, 백신접종비 5(개·고양이 종합백신, 광견병백신, 캔넬코프백신, 인플루엔자백신), 검사비 2(전혈구 검사, X-ray 검사)
- 동물병원 규모에 따라 진료비용 게시 의무화 단계적 시행
 - * ('23.1.5.) 수의사 2인 이상 종사 동물병원, ('24.1.5.) 수의사 1인 이상 종사 동물병원
- 전국 수의사 2인 이상 동물병원(약 1,000개소) 진료비 현황* 조사·공개('23.8)
 - * 비용게시 의무 대상 진료 항목 11종의 지역별 최저·최고·평균·중간값 공개

<동물병원 진료비 조사·공개 시스템>



- 비용게시 의무 대상 진료 항목 확대(11종 → 20종) 추진(제도개선 '24.9, 시행: '25.1)
 - * 9종 추가: 백신접종비 1(개 코로나바이러스백신), 검사비 5(혈액화학검사, 전해질검사, 초음파검사, CT검사, MRI 검사), 예방비 3(심장사상충, 외부기생충, 광범위 구충)
- 전국 수의사 1인 이상 동물병원(약 4,200개소) 진료비 현황 조사·공개('24.12월)